|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물회사 분류 감독관리 규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공고 [2011] 9호  《선물회사 분류 감독관리 규정》을 공포하는 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11년 4월 12일  **제1장 총 칙**  **제1조** 선물회사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선물회사 중개(中介)직능의 진일보 심화를 유도하며, 선물회사의 지속적이고 규범화된 건강한 발전과 성장을 촉진하고 선물업종을 전면적으로 업그레이드 하여 국민경제능력에 봉사하기 위해 《선물거래 관리조례》, 《선물회사 관리방법》 등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선물회사 분류라 함은 선물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을 기초로, 회사의 시장경쟁력, 기관투자자의 육성과 발전상황, 지속적인 준법상황을 감안하여, 본 규정에 따라 선물회사의 분류를 평가하고 확정하는 것을 뜻한다.  **제3조** 중국 증감회는 시장발전 정황과 신중성 감독관리 원칙에 근거하고, 선물 업종 등 유관방면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선물회사 분류의 평가지표와 표준을 제정하고 적시에 조정한다.  **제4조** 선물회사의 분류평가는 중국 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가 조직실시하고,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객관, 공정 원칙을 견지한다.  **제5조** 중국 증감회는 선물회사 분류 감독관리 평가위원회(이하 “심사평가위원회”)를 설립하고 심사평가 사항에 책임을 진다.  심사평가위원회는 중국 증감회, 중국 선물업 협회, 중국선물보증금감독통제센터유한책임회사(이하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와 선물거래소 유관인원으로 구성된다. 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방법, 조직구조, 업무절차와 의사규칙은 중국 증감회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6조** 선물회사 평가심사 업무에 참여하는 인원은 관련된 전문자질, 업무능력과 감독관리 경험을 구비해야 하며, 업무 중 원칙을 견지하고, 멸사봉공하며 근면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7조** 중국 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는 분류결과에 근거하여 감독자원을 합리적으로 안배하고 다른 유형의 선물회사에 대해 차별화 된 감독관리 정책을 실시한다.  분류평가는 중국 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의 감독관리조치를 대체할 수 없다.  **제2장 평가지표**  **제8조** 선물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은 주로 선물회사 고객자산 보호, 자본충족, 회사 운영, 내부통제, 정보시스템 안전, 정보공개 등 6가지 평가지표에 근거하고 《선물회사 리스크 관리능력 평가지표와 표준》(첨부 참조)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며, 선물회사의 각종 리스크 통제능력과 관리능력에 대해 구현한다.  (1) 고객자산보호. 주로 선물회사의 고객자산안전보장 메커니즘, 고객자산 안전성, 고객서비스 및 고객 관리 수준 등 정황을 반영하여 그 리스크 관리능력을 구현한다.  (2) 자본충족. 주로 선물회사의 순자본을 핵심으로 하는 리스크 감독관리 지표 및 관리정황을 반영하고 그 자본실력 및 유동성 상황을 구현한다.  (3) 회사운영. 주로 선물회사의 운영과 규범 운영정황을 반영하고 그 준법 리스크 관리능력을 구현한다.  (4) 내부통제. 주로 선물회사 내부 통제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정황을 반영하며, 그 내부통제 관리수준을 구현한다.  (5) 정보시스템 안전. 주로 선물회사 정보 시스템의 안정과 안전정황을 반영하며, 그 기술 리스크 관리능력을 구현한다.  (6) 정보공개. 주로 선물회사 정보공개의 적시성, 진실성, 정확성, 완전성을 반영하며, 그 신의성실 리스크 관리 능력을 구현한다.  **제9조** 선물회사의 시장경쟁력은 주로 선물회사의 평가기간 동안의 업무규모, 원가관리 능력, 수익능력 등 정황에 근거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1) 일평균 고객 권익총액  (2) 선물업무 수입  (3) 원가 관리능력  (4) 순이윤  (5) 순자산 수익률  **제10조** 선물회사의 기관투자자 육성과 발전 상황은 주로 선물회사가 산업 고객서비스인 정황 및 최적화된 선물시장 투자자 구조방면에서 발휘하는 역할에 근거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기관고객의 일평균 매수  (2) 기관고객의 일평균 권익  (3) 기관고객의 일평균 권익 성장량  **제11조** 선물회사의 지속적인 규정준수 상황은 주로 선물회사의 평가기간 내에 발생한 법규위반 행위, 선물업종이 자율조직이 취한 규율처분, 중국 증감회 및 그 파출기구가 취한 감독관리 조치, 행정처벌 또는 사법기관이 취한 형사처벌에 근거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제3장 평가방법**  **제12조** 운영이 정상적인 선물회사의 기준점수를 100점으로 한다. 기준점수를 토대로 하고 각 선물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시장경쟁력, 기관투자자 육성과 발전 상황, 지속적 규정준수 상황 등 평가지표와 기준에 근거하여, 그에 상응하도록 가점하거나 감점하여 선물회사의 평가득점을 계산 한다.  **제13조** 선물회사의 고객자산보호, 자본충족, 회사운영, 내부통제, 정보시스템의 안전, 정보공개 등 6개 리스크 관리능력 평가지표가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매 항에서 0.5점씩 감점한다.  **제14조** 선물회사의 시장경쟁력이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아래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도록 가점한다.  (1) 선물회사가 평가기간 동안 일평귝 고객권익 총액이 업계의 상위 5위, 6위~10위, 11위~20위, 21위~30위, 31위~40위, 41위~50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2점, 1.5점, 1점, 0.75점, 0.5점, 0.25점을 가점한다. 선물회사의 평가기간 내에 매수성립비가 전 업종평균의 50%보다 낮을 경우, 해당지표는 가점하지 않는다.  (2) 선물회사가 평가기간 동안 선물업계 수익이 업계의 상위 10위, 11위~20위, 21위~30위, 31위~40위, 41위~60위, 61위부터 중간순위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4점, 3점, 2점, 1.5점, 1점, 0.5점을 가점한다. 선물회사 평가기간 내 상품선물 수속비율 또는 금융선물 수속비율이 전 업종 평균수준의 50%보다 낮을 경우, 해당지표는 가점하지 않는다.  (3) 선물회사가 평가기간 내에 원가 관리능력이 업계의 상위 5위, 6위~10위, 11위~20위, 21위~30위, 31위~40위, 41위~40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0.1점을 가점한다. 선물회사가 평가기간 내에 선물업무 수익이 전 업종 평균수준보다 낮을 경우, 해당지표는 가점하지 않는다.  (4) 선물회사가 평가기간 내에 순이윤이 업계의 상위 5위, 6위~10위, 11위~20위, 21위~30위, 31위~40위, 41위~50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2점, 1.5점, 1점, 0.75점, 0.5점, 0.25점을 가점한다. 선물회사의 평가기간 내에 영업부 부서평균 수속비 수입이 전 업종 평균수준보다 낮을 경우, 해당지표는 가점하지 않는다.  (5) 선물회사가 평가기간 동안 순자산 수익율이 업계의 상위 10위, 11위~20위, 21위~30위, 31위~40위, 41위~50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을 가점한다.  선물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과 지속적 규정준수 상황지표 점수가 규정점수보다 낮은 경우, 시장경쟁력 지표는 가점하지 않는다.  **제15조** 선물회사의 기관투자자 육성과 발전 상황이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도록 가점한다.  (1) 기관고객의 일평균 매수가 업계의 상위 5위, 6위~10위, 11위~20위, 21위~30위, 31위~40위, 41위~50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2점, 1.5점, 1점, 0.75점, 0.5점, 0.25점을 가점한다.  (2) 기관고객의 일평균 수익이 업계의 상위 5위, 6위~10위, 11위~20위, 21위~30위, 31위~40위, 41위~50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2점, 1.5점, 1점, 0.75점, 0.5점, 0.25점을 가점한다.  (3) 기관고객의 일평균 수익 성장량이 업계의 상위 10위, 11위~20위, 21위~30위, 31위~40위, 41위~50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0.5, 0.4, 0.3, 0.2, 0.1점을 가점한다.  **제16조** 선물회사가 평가기간 내에 아래의 정황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의 원칙에 따라 감점한다.  (1) 리스크 감독관리 지표가 감독관리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매회 1점씩 감점한다. 리스크 감독관리 지표 경보 발생 시, 매회 0.5점씩 감점한다.  (2)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에 중대한 경보가 발생하였고 사실을 확인하여 선물회사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매회 0.5점씩 감점한다.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에 일반경보가 발생하였고 사실을 확인하여 선물회사의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매회 0.25점씩 최고 3점을 감점한다.  (3) 규정을 위반하여 자유자금을 사용하거나 주주, 실질통제인 또는 기타 관련인을 위해 융자, 대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매회 2점을 감점한다.  (4) 보증금이 부족한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도록 허용한 경우, 매회 2점씩 감점한다.  (5) 증빙오류와 보증금 초과(穿仓) 손실금액이 당기 인출 리스크 준비금액의 10%를 초과한 경우 2점을 감점한다.  (6) 회계감사보고(审计报告)나 심사보고(审阅报告)에 비표준 감사의견이나 심사의견이 제시된 경우, 매회 3점씩 감점한다.  (7) 선물업무 집무자격이 없는 인원을 임용하여 선물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매회 0.1점씩, 최고 2점을 감점한다.  (8) 임직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를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에 임용한 경우, 매회 2점씩 감점한다.  (9) 동사장, 고급관리인원이 3개월 이상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경우, 매회 2점씩 감한다. 독립동사가 3개월 이상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경우, 매회 1점씩 감점한다. 동사(독립동사 포함), 감사(감사회 주석 포함)이 회사 정관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며, 3개월 이상 자리를 공석으로 두는 경우, 매회 1인당 0.25점씩 감점한다.  (10) 지분권을 변경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비안보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매회 10점씩 감점한다.  (11) 경영장소를 허가 없이 설립, 변경한 경우, 매회 10점씩 감점한다.  (12) 규정에 따르지 않고 분류평가 결과를 사용하는 경우, 매회 1점씩 감점한다.  (13) 선물투자자문 전개 등 혁신업무가 유관 업무규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매회 0.5점씩 감점한다.  **제17조** 선물회사가 평가기간에 중국 증감회와 그 파출기구의 감독관리조치,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사법기관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아래의 원칙에 따라 감점한다.  (1) 개정명령통지서를 하달 받았거나 동사, 감사, 고급관리인원이 회사의 위법, 법규위반행위로 인해 감독관리 면담에 책임을 부담할 경우, 매회 2점씩 감한다.  (2) 《선물거래 관리조례》제 59 조 제 2 항 제 (2) 호~제 (7) 호의 감독관리조치를 받은 경우 매회 3점씩 감한다.  (3) 동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이 회사의 법률위반, 규정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경 고 또는 벌금처벌을 받은 경우 3점씩 감점한다. 임직자격이 중지, 취소되었거나 부적합한 인선으로 인정된 경우 매회 5점씩 감점하며, 일정기간 시장진입 금지조치를 받는 경우, 매회 8점을 감점하며, 영구적으로 시장진입 금지조치를 받는 경우, 매회 10점씩 감점한다.  (4) 《선물거래 관리조례》 제 59 조 제 2 항 제 (1) 호의 감독관리조치를 받은 경우 매회 10점씩 감한다.  (5) 경고조치를 받는 경우, 매회 12점을 감점한다. 벌금처분 또는 불법소득을 몰수당한 경우 매회 15점씩 감점한다.  (6) 일부 업무의 허가취소, 분지기구 폐쇄처분을 받거나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매회 20점씩 감점한다.  **제18조** 선물회사 영업부가 제17조의 감독관리조치를 받은 경우 영업부 소재지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가 즉시 선물회사 주소지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에 고지하여야 한다.  선물회사 영업부에 대하여는 제17조가 정한 원칙에 따라 감점한다.  **제19조** 선물회사가 중국선물업협회의 훈계, 공개견책, 일부 회원권리 정지 처분을 받는경우, 매회 0.5점씩 감점한다. 회원자격이 정지되는 경우, 매회 1점씩 감점한다. 회원자격이 취소되는 경우, 매회 2점씩 감점한다. 선물회사 종업인원이 중국 선물업협회 규율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매회 1인당 0.25점씩 감점한다. 선물회사 및 그 종업인원이 동일한 규정위반 사항으로 규율징계를 받는 경우, 가장 높은 점수에 따라 감점한다. 선물회사가 선물거래소가 하달한 감독관리 의견서를 받는 경우, 매회 0.25점씩 감점한다. 경고, 서면경고, 통보비판, 공개질책, 강행평창(선물회사가 정당한 이유로 규정기한 내에 강행평창하지 않는 것 제외), 벌금, 불법소득 몰수당하는 경우, 매회 0.5점씩 감점한다. 업무정지/제한, 회원자격 정지/조정을 당하는 경우, 매회 1점씩 감점한다. 회원자격 취소, 시장진입 금지를 당하는 경우, 매회 2점씩 감점한다.  **제20조** 선물회사가 규정위반 행위로 규율처분, 감독관리조치, 행정처벌,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동일 규정위반행위로 여러 개의 규율처분, 감독관리조치, 행정처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감점 최고항목에 따라 감점하고 중복 감점하지 않는다. 동일하지 않은 규정위반 행위로 동일 규율처분, 감독관리조치, 행정처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각기 계산하여 합계를 감하여야 한다.  선물회사가 동일한 사항으로 다른 평가기간에 규율처분, 감독관리조치, 행정처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감점 최고항목에 따라 감점한다. 동일한 사항으로 이전 평가기간에 이미 감점 받았으나, 감점 최고항목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감점 최고치와 이미 감점한 점수와의 차이만큼 감점한다.  선물회사가 규정위반 행위로 규율처분, 감독관리조치, 행정처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어떠한 지배주주나 실질통제인이 변경되더라도 모두 그에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감점한다.  **제21조** 선물회사가 본 규정 제17조 제(1)항 규정의 감독관리조치 처분을 받는 경우, 규정된 시간 내에 개정하여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의 검수를 통과할 수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감독관리조치는 감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규정위반 행위에 따라 감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선물회사가 자발적으로 규율위반 행위를 보고하고 만약 해당 행위가 본 규정 제29조 제1항에 열거된 규정위반 형태에 속하지 않는 경우, 심사평가위원회의 인가를 거쳐 감점을 절반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 선물회사가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아래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게 가점한다.  (1) 평가기간에 기타 선물회사와 합병하고 평가기간 내에 중국 증감회의 행정인가를 취득한 경우 4점을 가점할 수 있다.  (2) 선물회사의 잉여 순자본이 1억 위안의 배수가 되는 경우, 매 배수마다 0.5점씩 가점하고 최고 2점까지 가점할 수 있다. 그러나 선물회사의 리스크 감독관리지표가 평가기간에 경보가 발생하거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가점하지 않는다.  **제23조**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는 평가기간 내 선물회사의 일상감독관리 협력, 전문 감독관리 업무 실행 및 개정수행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감점할 수 있으며 최고 2점까지 감할 수 있다.  **제24조** 선물회사 정보기술 건설, 자유자금 관리 등 방면의 내용을 분류평가에 포함시키는 유관규정은 선물시장의 발전정황과 감독관리 업무 수요에 근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4장 회사유형**  **제25조** 선물회사 평가득점에 따라 선물회사를 A(AAA, AA, A), B(BBB, BB, B), C(CCC, CC, C), D, E 등 5개 유형, 11개 등급으로 나눈다.  (1) A유형회사는 리스크 관리능력, 시장경쟁력, 기관투자자 육성과 발전상황, 지속적 준법상황의 종합평가가 업계 내에서 최고수준이며, 업무리스크를 비교적 잘 통제할 수 있는 회사이다.  (2) B유형회사는 리스크 관리능력, 시장경쟁력, 기관투자자 육성과 발전상황, 지속적 준법상황의 종합평가가 업계 내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업무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회사이다.  (3) C유형회사는 리스크 관리능력, 시장경쟁력, 기관투자자 육성과 발전상황, 지속적 준법상황의 종합평가가 업계 내에서 일반적인 수준이며, 리스크 관리능력과 기본적으로 부합하는 회사이다.  (4) D유형회사는 리스크 관리능력, 시장경쟁력, 기관투자자 육성과 발전상황, 지속적 준법상황의 종합평가가 비교적 낮으며, 잠재 리스크가 회사 부담범위를 초월할 수 있는 회사이다.  (5) E유형회사는 잠재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리스크 처리조치를 취하는 회사이다.  **제26조** A(AAA, AA, A), B(BBB, BB, B), C(CCC, CC, C), D 등 4개 유형 10개 등급의 회사는 중국 증감회가 매년 업계 발전상황에 근거하고 그전 연도 분류결과에 결부시켜 전체 선물회사 평가득점 분포상황에 따라 중간 수를 기준으로 일정한 점수구간을 확정한다.  **제27조** 선물회사의 일평균 고객권익총액이 전국 선물회사 일평균 고객권익총액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A유형회사로 평가하지 못한다.  **제28조** 법에 의거하여 조업중지 개정명령 조치를 취하였거나 여타회사의 위탁관리, 인수관리 지정 등 리스크 처리조치를 취한 선물회사는 E유형회사로 정한다.  **제29조** 선물회사 평가기간에 주주의 허위출자, 주주의 출자포탈, 고객보증금 유용, 경영범위 초월, 정보시스템의 감독관리요구 미부합, 일상경영 및 자가평가 과정에 중국 증감회와 그 파출기구,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에 허위자료를 보고하는 등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유형을 3등급 하향조정 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직접 D유형으로 평가한다.  선물회사가 자가평가 시 실제대로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주석을 달지 않고, 누락, 은폐하는 등의 정황은 감점해야 하는 항목에 2배로 감점한다.  **제30조** 선물회사가 규정기한 내에 자가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회사유형을 1등급 하향조정 한다. 분류결과 확정기한 전에 자가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D유형으로 평가한다.  **제31조** 선물회사의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이상이 발생하여 회사유형 조정을 초래한 경우, 심사평가위원회가 유관상황에 근거하여 즉시 선물회사의 유형에 대해 동태 조정할 권한이 있다. 선물회사가 지속경영 과정 중 업무규모, 재무상황, 지분권 구조 등 방면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동태조정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술한 유형조정이 선물회사유형의 상향조정인 경우에는 선물회사의 평가지표가 6개월 이상 지속되었고 상향조정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E유형회사는 최고 C유형 C급으로, D유형 회사는 최고 C유형 CCC급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고, A, B, C유형 회사는 상향조정하지 않는다.  선물회사가 동태조정을 신청한 경우, 회사 주소지의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의 기초심사 동의를 거친 후 심사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2조** 선물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의 존속회사가 전 년도 평가기간 내에 본 규정 제29조 제1항에 열거된 규정위반 사항이 존재하지 않고, 신청일까지 규정위반 사항이 전부 개정 완료된 경우, 합병 후의 존속회사는 중국 증감회가 선물회사 합병을 비준한 회답문건을 수령한 날로부터 전 년도 분류결과 조정을 원 합병각방의 분류결과 중 더 높은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합병 후의 존속회사가 분류결과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 주소지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의 기초심사 동의를 거친 후 심사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조직실시**  **제33조** 선물회사 유형평가는 선물회사의 자가평가,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의 기초심사, 심사평가위원회의 재확인 심사, 중국 증감회의 평가결과 확인 방법을 취한다.  **제34조** 선물회사의 유형평가는 매년 1회씩 진행하며 리스크 관리능력 및 지속적 규정 준수평가 지표는 전 년도 4월 1일에서 당해년도 3월 31일까지를 평가기간으로 한다. 관련 재무데이터, 경영데이터는 원칙에 따라 전 년도 연도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35조** 선물회사는 이 규정에 따라 자가평가를 진행하고 평가지표와 기준에 비추어 존재하는 문제점과 규율처분, 감독관리조치, 행정처벌, 형사처벌 등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며, 회사 법정대표자와 회사의 경영관리책임자, 수석 리스크(위험) 관리자가 서명 확인한 후 매년 4월 15일 전에 자가평가 결과를 회사주소지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36조**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는 선물회사의 자기평가를 기초로 일상 감독관리에서 파악한 상황에 근거하여 선물회사의 자가평가 결과에 대해 기초심사와 평가득점 계산을 진행하고 매년 5월 15일 전에 기초심사 결과를 심사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7조**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는 기초심사 과정에서 관련 문제들을 심사하고 선물회사와 상황을 대조하여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제38조** 심사평가위원회는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의 기초심사를 토대로 재심사하고 재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선물회사의 유형을 심의, 확정한다. 선물회사 분류결과는 중국 증감회의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9조** 선물회사가 불가항력이나 기타 특수사정으로 감점면제 신청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의 기초심사를 거친 후, 심사평가위원회가 이를 재확인 한 다음 심사 결정한다.  **제40조** 중국 증감회는 매년 7월 15일 전으로 구체 득점과 해당유형을 서면으로 선물회사에 고지한다.  **제41조** 선물회사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류결과통지 입수일로부터 1개월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선물회사가 서면 이의제기를 한 경우, 회사주소지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의 기초심사 동의를 거쳐 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2조** 선물회사가 자기평가 시에 중대한 사항을 은폐하거나 보고, 제공하는 정보와 자료에 허위기재, 오해를 살 수 있는 서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있는 경우,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는 서명, 확인한 회사 법정대표자와 경영인원에 대하여 감독관리 조치를 취하고 신용기록에 기재한다.  **제43조**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가 일상감독관리 활동에서 선물회사의 규정위반행위나 이상상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감독관리 조치를 취하고 감독관리서류에 기입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선물회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초심사와 평가를 진행하여 점수를 계산한다.  **제44조**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가 선물회사의 위법, 규율위반 행위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감독관리 조치를 취하는 것과 선물회사 유형 기초심사의 품질은 관할구역 책임제를 관철하는 것으로서 선물회사에 대한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의 감독 관리업무실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제6장 분류결과의 사용**  **제45조** 중국 증감회는 분류감독관리원칙에 따라 각종유형의 선물회사에 대한 감독 관리 자원분배, 현장검사와 비 형장검사의 빈도 등에서 차별화한다.  **제46조** 선물회사의 분류결과를 선물회사가 업무유형 증가, 신규업무 네트워크 설립 등 사항의 신중성 조건으로 한다.  **제47조** 선물회사의 분류결과를 신규업무 시범범위와 보급순을 확정하는 근거로 한다.  **제48조** 선물회사의 분류결과를 선물회사 투자자 보장기금의 부동한 불입비율을 확정하는 근거로 한다.  **제49조** 선물회사의 분류결과를 주로 중국 증감회와 그 파출기구, 각 선물거래소,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 중국선물협회 등 기구에 제공하여 사용하게 한다.  선물회사는 분류결과를 광고, 홍보, 마케팅 등 상업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7장 부 칙**  **제50조** 이 규정이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의 중대한 경보라 함은 선물회사 보증금 폐쇄권(圈) 내 자유 자금의 부족 또는 보증금의 결여 등 사항으로 초래된 경보 및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가 인정한 기타 중대한 경보상황을 뜻한다.  (2) 선물보증금 감독통제센터의 일반경보라 함은 상기 중대경보를 제외한 기타경보를 뜻한다.  (3) 선물대리인 업무수입이라 함은 선물대리 업무 수속비 수입 및 기타 중국 증감회의 비준을 거쳐 전개한 선물경영 업무 수입을 뜻한다.  (4) 원가관리능력은 선물회사의 선물 업무수입/ (업무관리비+영업세금 및 부가+중개수수료 지출)를 뜻한다.  (5) 순자산 수익율은 순이윤/순자산을 뜻한다.  (6) 기관고객의 일평균 매수란 선물회사 각 선물품종의 기관고객(비자연인 고객, 이하 동일)의 일평균 매수 점유비의 합을 아래의 공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뜻한다.  1. 모(某)회사 모(某) 선물품종의 기관고객 일평균 매수 점유비(P):  그 중, i=평가기간 중의 거래일수; a=모회사 모 선물품종의 당일 기관고객의 매수량; A=해당 품종의 당일 기관고객 총 매수.  2. 모회사 각 선물품종의 기관고객의 일평균 매수 점유비의 합:  ∑Pr  그 중, r=선물품종. 황대두 1호와 황대두2호, 경맥(硬麦)과 강맥(强麦), 콘크리트 보강용 강철봉과 와이어로드는 1개 품종으로 계산한다.  (7) 기관고객의 일평균 권익은 선물회사 기관고객의 일평균 고객 권익을 뜻한다.  (8) 기관고객의 일평균 권익 성장량이란 본 평기기간 기관고객의 일평균 권익-전년도 평가기간 기관고객 일평균 권익을 뜻한다.  (9) 매수성립비란 일평균 매수량/일평균 거래성립량을 뜻 한다.  (10) 수속비율이란 수속비 수입/ 일평균 거래성립량을 뜻한다.  (11) 선물업무수익이란 선물회사의 선물업무 수입-(업무관리비+영업세금 및 부가+중개수수료 지출)을 뜻한다.  (12) 영업부 부서평균 수속비 수입이라 함은 수속비 수입/영업부 수량을 뜻한다. 선물회사 본사가 아직 회사 주소지 중국 증감회 파출기구에 비안하여 경영업무를 전개하지 않은 경우, 1개 영업부로 간주한다.  (13) 잉여순자본은 선물회사 순자본에서 규정에 따라 그 업무 규모에 부합되는 순자본을공제한 후의 부분을 뜻한다.  **제51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2009년 8월 17일에 공포한 《선물회사 분류 감독관리 규정(잠정)》(증감회공고[2009]22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 선물회사 리스크 관리능력 평가지표와 기준  첨부:   |  |  |  | | --- | --- | --- | | **선물회사 리스크 관리능력 평가지표와 기준** | | | | **평가지표** | **번호** | **평가표준** | | **1. 고객**  **자산보호** | **1.01** | 선물보증금구좌의 관리, 보고 비치 및 그 공개가 관련규정에 부합함. | | **1.02** | 선물보증금의 예금, 입출금이 관련규정에 부합함. | | **1.03** | 선물보증금 폐쇄관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며, 관련규정 위반상황이 없음. | | **1.04** | 감독통제센터에 상정하는 보고서가 진실, 정확, 완벽하고 규정일시를 준수함. | | **1.05** | 개설단계가 관련규정 및 투자자 타당성 제도에 부합함. | | **1.06** | 거래단계가 관련규정에 부합하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을 명확히 보장함. | | **2. 자본충족** | **2.01** | 리스크 감독관리 지표계산이 규정에 부합함. | | **2.02** | 리스크 감독관리 지표의 동태 감독통제 제도와 보충 제도를 수립하고 중대한 업무발생 전에 민감성 테스트를 진행함. | | **2.03** | 규정에 따라 정례보고와 리스크 감독관리지표 이상발생 시의 임시보고 의무를 수행함. | | **3. 회사운영** | **3.01** | 선물회사와 지주주주, 실질통제인은 업무, 인원, 자산, 재무, 장소 등 면에서 엄격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경영함. | | **3.02** | 회사의 3회(이사회, 감사회, 주주총회) 제도가 건전하고 직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함. | | **3.03** | 이사, 감사, 고급관리임원의 임직상황이 감독관리요구에 부합하고 허위정보제공, 중대사항 은닉, 감독관리 거부, 직무유기 등 상황이 없음. | | **3.04** | 회사 주주 및 그 관련자의 선물회사자산 점유나 회사와 고객의 합법적 권익훼손 상황이 없음. | | **3.05** | 회사와 주주가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부문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 | | **3.06** | 선물회사가 수석 리스크 감독관이 충분한 알 권리와 독립검사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수석 리스크 감독관이 효과적으로 직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과 여건을 제공함. | | **3.07** | 수석 리스크 감독관은 규정에 따라 감독, 검사직책을 이행하고 보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감독관리부문의 요구에 따라 활동보고를 제출함. | | **4. 내부통제** | **4.01** | 회사와 영업부의 임직원, 직장, 장소, 시설 등이 운영과 감독관리요구에 부합함. | | **4.02** | 회사의 내부통제조직이 건전하고 필요한 업무 및 기능관리부문이 설치되었으며 불상용직무간 분리원칙에 부합함. | | **4.03** | 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제도가 완벽하고 재무, 거래, 결산, 리스크통제 등 제반업무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며 감독관리요구에 부합함. | | **4.04** | 회사가 중대한 리스크 경보 메커니즘과 우발사건 대처제도를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함. | | **4.05** | 회사가 확실하고 합리한 수권책임제를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함. | | **4.06** | 회사가 엄격한 내부단속, 감독제도와 책임추궁제도를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함. | | **4.07** | 회사가 자유자금 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자금용도와 가 효과적이고 자금의 용도와 이체절차를 효과적으로 통제함. | | **4.08** | 영업부가 “4가지 통일(四统一)”관리를 효과적으로 집행함. | | **5. 정보**  **시스템 안전** | **5.01** | 정보기술 관리제도가 완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됨. | | **5.02** | 정보시스템 안전이 안정적으로 운영됨. | | **5.03** | 응급대처 메커니즘이 건전하고 효과적임. | | **5.04** |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 상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보고함. | | **6. 정보공개** | **6.01** | 정보공개 제도가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됨. | | **6.02** | 공개하는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벽하여야 하며 허위게재, 오해를 조성할 수 있는 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이 없음. | | **6.03** | 정보는 규정에 따라 적시에 공개하며, 규정장소에 규정경로를 통해 공개함. | | **6.04** | 정보공개작업 전담자를 두고 직책을 명확히 하며 공개정보작성 작업이 감독관리 요구에 부합함. | |  | **期货公司分类监管规定**  中国证券监督管理委员会公告〔2011〕9号  现公布《期货公司分类监管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  二○一一年四月十二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有效实施对期货公司的监督管理，引导期货公司进一步深化中介职能定位，促进期货公司持续规范健康发展和做优做强，全面提升期货行业服务国民经济能力，根据《期货交易管理条例》、《期货公司管理办法》等有关规定，制定本规定。  **第二条** 期货公司分类是指以期货公司风险管理能力为基础，结合公司市场竞争力、培育和发展机构投资者状况、持续合规状况，按照本规定评价和确定期货公司的类别。  **第三条** 中国证监会根据市场发展情况和审慎监管原则，在征求期货行业等有关方面意见的基础上，制定并适时调整期货公司分类的评价指标与标准。  **第四条** 期货公司的分类评价由中国证监会及其派出机构组织实施，坚持依法合规、客观公正的原则。  **第五条** 中国证监会设立期货公司分类监管评审委员会（以下简称评审委员会），负责评审等事宜。  评审委员会由中国证监会、中国期货业协会、中国期货保证金监控中心有限责任公司（以下简称期货保证金监控中心）和期货交易所相关人员组成。评审委员会的产生办法、组织结构、工作程序和议事规则由中国证监会另行规定。  **第六条** 参与期货公司分类评价工作的人员应当具备相应的专业素质、业务能力和监管经验，在工作中坚持原则、廉洁奉公、勤勉尽责。  **第七条** 中国证监会及其派出机构根据分类结果，合理配置监管资源，对不同类别的期货公司实施区别对待的监管政策。  分类评价不能替代中国证监会及其派出机构的监管措施。  **第二章 评价指标**  **第八条** 期货公司的风险管理能力主要根据期货公司客户资产保护、资本充足、公司治理、内部控制、信息系统安全、信息公示等6类评价指标，按照《期货公司风险管理能力评价指标与标准》（见附件）进行评价，体现期货公司对各种风险的控制能力和管理能力。  （一）客户资产保护。主要反映期货公司客户资产安全保障机制、客户资产安全性、客户服务及客户管理水平等情况，体现其操作风险管理能力。  （二）资本充足。主要反映期货公司以净资本为核心的风险监管指标及管理情况，体现其资本实力及流动性状况。  （三）公司治理。主要反映期货公司治理和规范运作情况，体现其合规风险管理能力。  （四）内部控制。主要反映期货公司内部控制制度有效运行情况，体现其内部控制管理水平。  （五）信息系统安全。主要反映期货公司信息系统的稳定与安全情况，体现其技术风险管理能力。  （六）信息公示。主要反映期货公司信息公示的及时性、真实性、准确性、完整性，体现其诚信风险管理能力。  **第九条** 期货公司市场竞争力主要根据期货公司在评价期内的业务规模、成本管理能力、盈利能力等情况进行评价，包括以下内容：  （一）日均客户权益总额；  （二）期货业务收入；  （三）成本管理能力；  （四）净利润；  （五）净资产收益率。  **第十条** 期货公司培育和发展机构投资者状况主要根据期货公司为产业客户服务的情况，以及在优化期货市场投资者结构方面所发挥的作用进行评价，包括以下内容：  （一）机构客户日均持仓；  （二）机构客户日均权益；  （三）机构客户日均权益增长量。  **第十一条** 期货公司持续合规状况主要根据期货公司在评价期内发生的违规行为，期货行业自律组织采取的纪律处分，中国证监会及其派出机构采取的监管措施、行政处罚，或者司法机关采取的刑事处罚进行评价。  **第三章 评价方法**  **第十二条** 设定正常经营的期货公司基准分为100分。在基准分的基础上，根据期货公司风险管理能力、市场竞争力、培育和发展机构投资者状况、持续合规状况等评价指标与标准，进行相应加分或扣分以确定期货公司的评价计分。  **第十三条** 期货公司客户资产保护、资本充足、公司治理、内部控制、信息系统安全、信息公示等6类风险管理能力评价指标不符合具体评价标准的，每项扣0.5分。  **第十四条** 期货公司市场竞争力符合以下条件的，按照以下原则给予相应加分：  （一）期货公司评价期内日均客户权益总额位于行业前5名、6至10名、11至20名、21至30名、31至40名、41至50名的，分别加2分、1.5分、1分、0.75分、0.5分、0.25分。期货公司评价期内持仓成交比低于全行业平均水平50%的，该指标不予加分；  （二）期货公司评价期内期货业务收入位于行业前10名、11至20名、21至30名、31至40名、41至60名、61名至排名中位数的，分别加4分、3分、2分、1.5分、1分、0.5分。期货公司评价期内商品期货手续费率或金融期货手续费率低于全行业平均水平50%的，该指标不予加分；  （三）期货公司评价期内成本管理能力位于行业前5名、6至10名、11至20名、21至30名、31至40名、41至50名的，分别加1分、0.8分、0.6分、0.4分、0.2分、0.1分。期货公司评价期内期货业务盈利低于全行业平均水平的，该指标不予加分；  （四）期货公司评价期内净利润位于行业前5名、6至10名、11至20名、21至30名、31至40名、41至50名的，分别加2分、1.5分、1分、0.75分、0.5分、0.25分。期货公司评价期内营业部部均手续费收入低于全行业平均水平的，该指标不予加分；  （五）期货公司评价期内净资产收益率位于行业前10名、11至20名、21至30名、31至40名、41至50名的，分别加0.5分、0.4分、0.3分、0.2分、0.1分。  期货公司风险管理能力与持续合规状况指标得分低于规定分值的，市场竞争力指标不予加分。  **第十五条** 期货公司培育和发展机构投资者状况符合以下条件的，按照以下原则给予相应加分：  （一）机构客户日均持仓位于行业前5名、6至10名、11至20名、21至30名、31至40名、41至50名的，分别加2分、1.5分、1分、0.75分、0.5分、0.25分；  （二）机构客户日均权益位于行业前5名、6至10名、11至20名、21至30名、31至40名、41至50名的，分别加2分、1.5分、1分、0.75分、0.5分、0.25分；  （三）机构客户日均权益增长量位于行业前10名、11至20名、21至30名、31至40名、41至50名的，分别加0.5分、0.4分、0.3分、0.2分、0.1分。  **第十六条** 期货公司在评价期内发生以下情形时，按照以下原则进行扣分:  （一）风险监管指标未达到监管标准的，每次扣1分；风险监管指标预警的，每次扣0.5分；  （二）期货保证金监控中心重大预警，经核实为期货公司原因的，每次扣0.5分；期货保证金监控中心一般预警，经核实为期货公司原因的，每次扣0.25分，最高扣3分；  （三）违规使用自有资金，或者为股东、实际控制人或者其他关联人提供融资，对外担保的，每次扣2分；  （四）允许客户在保证金不足的情况下进行开仓交易的，每次扣2分；  （五）错单和穿仓损失金额超过当期提取的风险准备金额10%的，扣2分；  （六）审计报告及审阅报告被出具非标准审计意见或审阅意见的，每次扣3分；  （七）任用不具有期货从业资格的人员从事期货业务的，每人次扣0.1分，最高扣2分；  （八）任用未取得任职资格的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的，每人次扣2分；  （九）董事长、高级管理人员存在3个月以上缺位的，每人次扣2分；独立董事存在3个月以上缺位的，每人次扣1分；董事（含独立董事）、监事（含监事会主席）不符合公司章程规定，存在3个月以上缺位的，每人次扣0.25分；  （十）未经许可或报备变更股权的，每次扣10分；  （十一）未经许可设立、变更经营场所的，每次扣10分；  （十二）未按规定使用分类评价结果的，每次扣1分；  （十三）开展期货投资咨询等创新业务不符合有关业务规则的，每次扣0.5分。  **第十七条** 期货公司在评价期内被中国证监会及其派出机构采取监管措施、行政处罚或者被司法机关刑事处罚的，按照以下原则进行扣分：  （一）被下达责令整改通知书，或者董事、监事和高级管理人员因对公司违法违规行为负有责任被监管谈话的，每次扣2分；  （二）被采取《期货交易管理条例》第五十九条第二款第（二）至（七）项监管措施的，每次扣3分；  （三）董事、监事和高级管理人员因对公司违法违规行为负有责任被警告或者罚款的，每次扣3分；被暂停、撤销任职资格或者被认定为不适当人选的，每次扣5分；被采取一定期限市场禁入措施的，每次扣8分；被采取永久性市场禁入措施的，每次扣10分；  （四）被采取《期货交易管理条例》第五十九条第二款第（一）项监管措施的，每次扣10分；  （五）被警告的，每次扣12分；被罚款或者没收违法所得的，每次扣15分；  （六）被撤销部分业务许可、关闭分支机构，或者被刑事处罚的，每次扣20分。  **第十八条** 期货公司营业部被采取本规定第十七条所述监管措施的，营业部所在地中国证监会派出机构应及时告知期货公司住所地中国证监会派出机构。  期货公司营业部按本规定第十七条所述原则进行扣分。  **第十九条** 期货公司被中国期货业协会训诫、公开谴责、暂停会员部分权利的，每次扣0.5分；被暂停会员资格的，每次扣1分；被取消会员资格的，每次扣2分。期货公司从业人员被中国期货业协会纪律惩戒的，每人次扣0.25分。期货公司及其从业人员因同一违规事项被纪律惩戒的，从高扣分。期货公司被期货交易所下发监管意见函的，每次扣0.25分；被警告、书面警示、通报批评、公开谴责、强行平仓（期货公司有正当理由未在规定期限内执行强行平仓的除外）、罚款、没收违规所得的，每次扣0.5分；被暂停或限制业务、暂停或调整会员资格的，每次扣1分；被取消会员资格、市场禁入的，每次扣2分。  **第二十条** 期货公司违规行为已被采取纪律处分、监管措施、行政处罚、刑事处罚的，或者同一违规行为被采取多项纪律处分、监管措施、行政处罚、刑事处罚的，按扣分最高的项目进行扣分，不重复扣分；不同违规行为被采取同一纪律处分、监管措施、行政处罚、刑事处罚的，应当分别计算，合计扣分。  期货公司因同一事项在不同评价期被分别采取纪律处分、监管措施、行政处罚、刑事处罚的，按最高分值扣分；同一事项在以前评价期已被扣分但未达到最高分值扣分的，按最高分值与已扣分值的差额扣分。  期货公司违规行为被采取纪律处分、监管措施、行政处罚、刑事处罚的，无论控股股东或者实际控制人是否发生变更，均应按相应的规定予以扣分。  **第二十一条** 期货公司被采取本规定第十七条第（一）项规定的监管措施时，能在规定的时间内完成整改且通过中国证监会派出机构验收的，对相应的监管措施可以不予扣分，但仍需按照违规行为进行扣分。  期货公司主动上报违规行为的，如果该行为不属于本规定第二十九条第一款所列违规情形，经评审委员会认可后可以减半扣分。  **第二十二条** 期货公司符合以下条件的，按照以下原则给予相应加分：  （一）在评价期内与其他期货公司进行合并且在评价期内已获中国证监会核准的，可加4分；  （二）期货公司剩余净资本达到1亿元整数倍的，每1倍数加0.5分，最高加2分。但期货公司风险监管指标在评价期内出现预警或不达标情形的，不予加分。  **第二十三条** 中国证监会派出机构可以根据期货公司在评价期内配合日常监管、落实专项监管工作及整改完成情况，对期货公司进行酌情扣分，最高可扣2分。  **第二十四条** 期货公司信息技术建设、自有资金管理等方面内容纳入分类评价的有关规定，根据期货市场发展情况和监管工作需要另行制定。  **第四章 公司类别**  **第二十五条** 根据期货公司评价计分的高低，将期货公司分为A（AAA、AA、A）、B（BBB、BB、B）、C（CCC、CC、C）、D、E等5类11个级别。  （一）A类公司风险管理能力、市场竞争力、培育和发展机构投资者状况、持续合规状况的综合评价在行业内最高，能够较好控制业务风险；  （二）B类公司风险管理能力、市场竞争力、培育和发展机构投资者状况、持续合规状况的综合评价在行业内较高，能够控制业务风险；  （三）C类公司风险管理能力、市场竞争力、培育和发展机构投资者状况、持续合规状况的综合评价在行业内一般，风险管理能力与业务规模基本匹配；  （四）D类公司风险管理能力、市场竞争力、培育和发展机构投资者状况、持续合规状况的综合评价在行业内较低，潜在风险可能超过公司可承受范围；  （五）E类公司潜在风险已经变为现实风险，已被采取风险处置措施。  **第二十六条** A（AAA、AA、A）、B（BBB、BB、B）、C（CCC、CC、C）、D等4类10个级别的公司，由中国证监会每年结合行业发展状况和以前年度分类结果，根据全部期货公司评价计分的分布情况，按照一定的分值区间确定。  **第二十七条** 期货公司日均客户权益总额未达到全国期货公司日均客户权益总额平均水平的，不得评为A类公司。  **第二十八条** 被依法采取责令停业整顿、指定其他机构托管、接管等风险处置措施的期货公司，定为E类公司。  **第二十九条** 期货公司在评价期内存在股东虚假出资、股东抽逃出资、挪用客户保证金、超范围经营、信息系统不符合监管要求、日常经营及自评中向中国证监会及其派出机构、期货保证金监控中心报送虚假材料等情形的，将公司类别下调3个级别；情节严重的，直接评为D类。  期货公司在自评时，若不如实标注存在问题，存在遗漏、隐瞒等情况，将在应扣分事项上加倍扣分。  **第三十条** 期货公司未在规定日期之前上报自评结果的，将公司类别下调1个级别；未在确定分类结果期限之前上报自评结果的，直接评为D类。  **第三十一条** 期货公司状况发生重大变化或者出现异常且足以导致公司分类类别调整的，评审委员会有权根据有关情况及时对相关期货公司的分类进行动态调整。期货公司在持续经营过程中，业务规模、财务状况、股权结构等方面情况的变化，不属于动态调整的范围。  上述分类调整属于调高期货公司类别的，期货公司评价指标应当自评价结果确定后持续6个月以上满足与调高类别相应的标准。E类公司最高可调至C类C级，D类公司最高可调至C类CCC级，A、B、C类公司不予调高类别。  期货公司申请动态调整的，应当经公司住所地中国证监会派出机构初审同意后上报评审委员会。  **第三十二条** 期货公司合并的，合并后的存续公司在上一年评价期内不存在本规定第二十九条第一款所列违规情形，且截至申请日违规事项全部整改完成，合并后的存续公司可以自收到中国证监会核准期货公司合并的批复文件之日起，申请将其上一年分类结果调整为原合并各方分类结果中的较高者。合并后的存续公司申请调整分类结果的，应当经公司住所地中国证监会派出机构初审同意后上报评审委员会。  **第五章 组织实施**  **第三十三条** 期货公司分类评价采取期货公司自评、中国证监会派出机构初审、评审委员会复核和评审、中国证监会确认评价结果的方法。  **第三十四条** 期货公司分类评价每年进行1次，风险管理能力及持续合规状况评价指标以上一年度4月1日至本年度3月31日为评价期；涉及的财务数据、经营数据原则上以上一年度经审计报表为准。  **第三十五条** 期货公司应当按照本规定进行自评，对照评价指标与标准，如实反映存在的问题及被采取的纪律处分、监管措施、行政处罚、刑事处罚等，经公司法定代表人和公司经营管理负责人、首席风险官签署确认后，于每年4月15日之前将自评结果上报公司住所地中国证监会派出机构。  **第三十六条** 中国证监会派出机构在期货公司自评的基础上，根据日常监管掌握的情况，对期货公司自评结果进行初审和评价计分，于每年5月15日之前将初审结果上报评审委员会。  **第三十七条** 在初审过程中，中国证监会派出机构应当就有关问题进行核查，并与期货公司核对情况，确认事实。  **第三十八条** 评审委员会在中国证监会派出机构初审的基础上组织复核，并根据复核结果评审确定期货公司的类别。期货公司分类结果由中国证监会确认后生效。  **第三十九条** 期货公司因不可抗力或其他特殊情形，认为有必要申请扣分豁免的，应当提交相应证明材料，经中国证监会派出机构初审后由评审委员会复核并审议决定。  **第四十条** 中国证监会于每年7月15日之前将期货公司的具体得分及所属类别书面告知期货公司。  **第四十一条** 期货公司对评价结果有异议的，可在收到分类结果通知之日起1个月内提出书面申诉。期货公司提出书面申诉的，应当经公司住所地中国证监会派出机构初审同意后上报评审委员会。  **第四十二条** 对于在自评时隐瞒重大事项或者报送、提供的信息和资料有虚假记载、误导性陈述或者重大遗漏的期货公司，中国证监会派出机构应当对签署确认意见的公司法定代表人和经理层人员采取相应监管措施，记入诚信档案。  **第四十三条** 中国证监会派出机构在日常监管工作中，对期货公司发生的违规行为和异常情况应当及时调查、迅速采取适当的监管措施并记入监管档案，在此基础上对期货公司进行客观、公正的初审和评价计分。  **第四十四条** 中国证监会派出机构对期货公司的违法违规行为是否及时、充分采取相应监管措施，以及期货公司分类初审的质量，是落实辖区监管责任制，考评中国证监会派出机构期货监管工作绩效的重要依据。  **第六章 分类结果的使用**  **第四十五条** 中国证监会按照分类监管原则，对不同类别的期货公司在监管资源分配、现场检查和非现场检查频率等方面区别对待。  **第四十六条** 期货公司分类结果将作为期货公司申请增加业务种类、新设营业网点等事项的审慎性条件。  **第四十七条** 期货公司分类结果将作为确定新业务试点范围和推广顺序的依据。  **第四十八条** 期货公司分类结果将作为确定期货投资者保障基金不同缴纳比例的依据。  **第四十九条** 期货公司分类结果主要供中国证监会及其派出机构、各期货交易所、期货保证金监控中心、中国期货业协会等机构使用。  期货公司不得将分类结果用于广告、宣传、营销等商业目的。  **第七章 附 则**  **第五十条** 本规定下列用语的含义：  （一）期货保证金监控中心重大预警，是指由于期货公司保证金封闭圈内自有资金不足或者保证金出现缺口等事项而导致的预警，以及期货保证金监控中心认定的其他重大预警情形。  （二）期货保证金监控中心一般预警，是指除上述重大预警以外的其他预警。  （三）期货业务收入，是指期货经纪业务手续费收入以及其他经中国证监会批准开展的期货经营业务收入。  （四）成本管理能力，是指期货公司期货业务收入/（业务管理费+营业税金及附加+佣金支出）。  （五）净资产收益率，是指净利润/净资产。  （六）机构客户日均持仓，是指期货公司在各期货品种上的机构客户（即非自然人客户，下同）日均持仓占比之和，按下列公式计算：  1．某公司在某期货品种上的机构客户日均持仓占比（P）：  其中，i=评价期内的交易天数；a=某公司在某期货品种上的当日机构客户持仓量；A=该品种的当日机构客户总持仓。  2．某公司在各期货品种上的机构客户日均持仓占比之和：  ∑Pr  其中，r=期货品种。黄大豆一号和黄大豆二号、硬麦和强麦、螺纹钢和线材均作为一个品种计算。  （七）机构客户日均权益，是指期货公司机构客户的日均客户权益。  （八）机构客户日均权益增长量，是指本评价期机构客户日均权益-上一个评价期机构客户日均权益。  （九）持仓成交比，是指日均持仓量/日均成交量。  （十）手续费率，是指手续费收入/成交金额。  （十一）期货业务盈利，是指期货公司期货业务收入-（业务管理费+营业税金及附加+佣金支出）。  （十二）营业部部均手续费收入，是指手续费收入/营业部数量。期货公司总部未向公司住所地中国证监会派出机构备案不开展经营业务的，视为1个营业部。  （十三）剩余净资本，是指期货公司净资本扣除按规定与其业务规模相匹配的净资本之后的部分。  **第五十一条** 本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2009年8月17日公布的《期货公司分类监管规定（试行）》（证监会公告〔2009〕22号）同时废止。  附件：期货公司风险管理能力评价指标与标准  附件：   |  |  |  | | --- | --- | --- | | 期货公司风险管理能力评价指标与标准 | | | | **评价指标** | **序号** | **评价标准** | | **1.客户资产保护** | **1.01** | 期货保证金账户的管理、报备、披露符合相关规定 | | **1.02** | 期货保证金的存放、出入金符合相关规定 | | **1.03** | 期货保证金封闭管理有效运行，不存在违反相关规定的情形 | | **1.04** | 向监控中心报送的数据真实、准确、完整，能够按规定及时报送 | | **1.05** | 开户环节符合相关规定和投资者适当性制度的要求 | | **1.06** | 交易环节符合相关规定，能够切实保障客户的合法权益 | | **2.资本充足** | **2.01** | 风险监管指标的计算符合规定 | | **2.02** | 建立了风险监管指标动态监控与补充机制，开展重大业务前进行敏感性测试 | | **2.03** | 按照规定履行了定期报告与风险监管指标异常时的临时报告义务 | | **3.公司治理** | **3.01** | 期货公司与控股股东或实际控制人在业务、人员、资产、财务、场所等方面严格分开、独立经营 | | **3.02** | 公司“三会”制度健全并有效履行职责 | | **3.03** | 董事、监事、高级管理人员任职情况符合监管要求，不存在提供虚假信息、隐瞒重大事项、拒绝配合监管、擅离职守等情况 | | **3.04** | 公司股东及其关联人未占用期货公司资产，未损害公司及客户的合法权益 | | **3.05** | 公司及股东能够按规定向监管部门履行报告义务 | | **3.06** | 期货公司确保首席风险官享有充分的知情权和独立的检查权，为首席风险官有效履职提供必要的条件和保障 | | **3.07** | 首席风险官按规定履行监督、检查职责，切实履行报告义务，并按要求及时向监管部门提交工作报告 | | **4.内部控制** | **4.01** | 公司和营业部的人员、岗位、场地、设施等方面符合运营和监管要求 | | **4.02** | 公司内部控制架构健全，设置了必要的业务和职能管理部门，符合不相容职务分离原则 | | **4.03** | 公司内部管理制度完善，财务、交易、结算、风险控制、合规等各项业务有效运转并符合监管要求 | | **4.04** | 公司建立了重大风险预警机制和突发事件应急处理制度并有效执行 | | **4.05** | 公司建立了明确、合理的授权分责制度并有效执行 | | **4.06** | 公司建立了严格的内部稽核监督和责任追究制度并有效执行 | | **4.07** | 公司建立了自有资金管理制度，对资金用途和划拨程序进行有效控制 | | **4.08** | 营业部“四统一”管理有效执行 | | **5.信息系统安全** | **5.01** | 信息技术管理制度完善并有效执行 | | **5.02** | 信息系统安全稳定运行 | | **5.03** | 应急处理机制健全有效 | | **5.04** | 按规定及时准确报送信息系统情况 | | **6.信息公示** | **6.01** | 信息公示制度健全且有效执行 | | **6.02** | 公示的信息真实、准确、完整，不存在虚假记载、误导性陈述或重大遗漏 | | **6.03** | 信息能够按规定及时公示，并在规定地点、通过规定渠道公示 | | **6.04** | 信息公示由专人负责、职责明确，信息公示工作符合监管要求 | |